

한별 SAFE의 맨홀속뚜껑(안전발판)



기존 맨홀링에 양카설치

맨홀속뚜껑 (안전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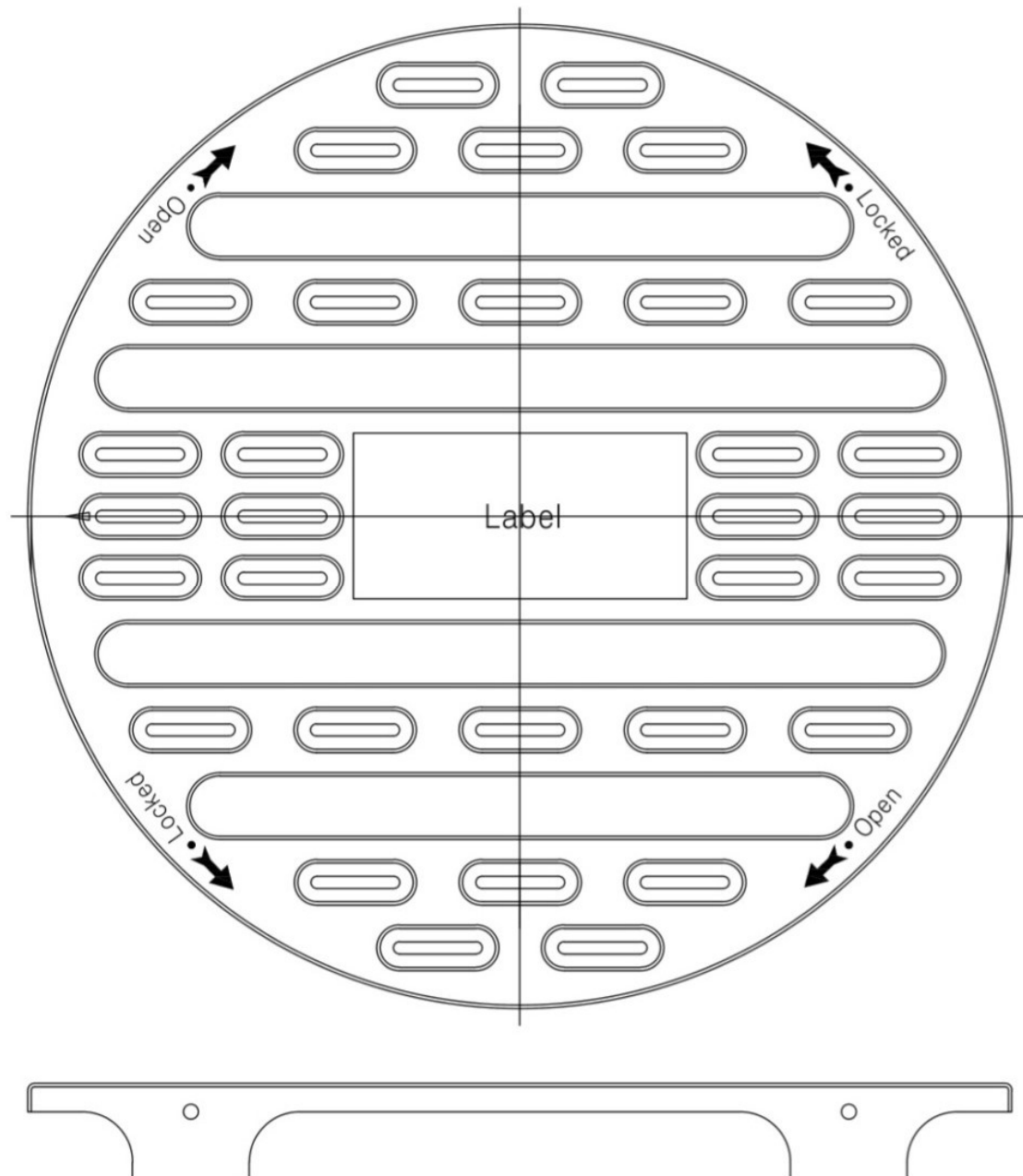
기존 맨홀에 속뚜껑 설치된 모습

속뚜껑 설치후 하중검사하는 모습

다른 사이즈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반사지에 회사 로고 및 글씨 표시 가능합니다

품 명	사이즈 (mm)	가 격 (원)	비고
맨홀속뚜껑 (안전발판)	590	100,000	기본주문
			100개 부가세별도 시공비별도

한별SAFE 맨홀속뚜껑 (안전발판) 도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로교통표지판 및 안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한별SAFE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맨홀속뚜껑(안전발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업체와는 달리 무거운 하중을 버틸수가 있고 설치가 간편
기존 맨홀에도 간단하게 설치가능합니다

속뚜껑에 고휘도반사지로 위험을 표시하여 시인성을 좋게 하였고
속뚜껑은 미끄럼방지 기술 및 특허와 디자인출원중입니다

맨홀 원뚜껑이 홍수에 열리더라도 속뚜껑은 특허출원중인 기술로 양카에
견고히 고정되어 홍수나 수압에 의해 속뚜껑은 전혀 열리지않습니다
하중도 일반공법이 아닌 그레이팅공법으로 제작
낙하사고 및 파손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제품을 사용하신다면 맨홀에 대한 안전은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은 최상으로 만족하게 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 제품문의 및 상담 ***
한별 SAFE 대표 김민호
053-955-1222
010-3520-7771

맨홀뚜껑 “안전표지판”에 관한 시행 법령

환경부 고시 제2019 - 207호 (2019.11.19.)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개정

1.제정이유

● 맨홀내 안전사고 예방, 분류식 정비사업 실효성 제고 등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계획 설계를 위해
현행 하수도 설계기준의 개선필요

2. 주요내용

가.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내 안전표지판 설치기준 마련

● 맨홀 출입 전 질식위험을 재인지할 수 있도록
속뚜껑 형식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안전문구를 표시토록 설계기준 개정

- 국가건설기준

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 KDS 61 00 00 : 2019 (2019.11.19. 개정)

환경부 관로시설 설계기준 KDS 61 40 00 : 2019

관로시설 설계기준 개정내용(국가건설기준 원문 p62 / p63)

7.2 맨홀부속물

(4) 맨홀 내 안전표지판

- 1)맨홀내 안전표지판은 점검이나 유지관리 시 질식,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뚜껑 아래에 속뚜껑 형식으로 설치하되,
맨홀뚜껑과 받침 사이의 수밀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2)맨홀내 안전표지판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3)맨홀내 안전표지판 상부에는 질식, 추락 등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안전문구를 표시하고 글씨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2021.01.19.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5.26.] [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시행 2021.1.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2021.1.19., 일부개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의무 등